

바랍니다.

첨부 고시안 1부

(제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개제의뢰

1. 아래와 같이 관보개제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제구분 : 고시

나. 정정사항 : 원도 지적 구역명칭 변경 구역 면적정정고시

다. 발규근거 :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전농 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면적정정고시 보고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27호

(85.5.18)로 구역변경된 전농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환지확정을

위한 용역성과 결과에 따라 면적정정이 필요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단순한 구역면적의 정정고시를 하엿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제 4 안)

수신 동대문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전농 제2 주택가량재개발구역 면적정정 고시 통보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27호

(85.5.18)로 구역변경된 전농 제2 주택가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귀구 환지

확정을 위한 용역성과결과에 따라 단순한 구역면적의 정정 고시를 하였기

통보하오니

2. 관할구청장은 이면적의 고시와 관련 일기 처리에 착안하도록 한
것이며 고시첨발부에 고시할 것.

첨부 고시문 사본 2부.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과장

제목 전농 제2 주택가량재개발구역 면적정정 고시 통보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되고, 같은고시 제227호(85.5.18)

로 구역변경된 전농제2 주택가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단순한 구역면적의 정정 고시를 하시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심시	1990.12.5	제 350 호
담당자	임세희장	법무담당관
		김

서울특별시고시 제 401 호

고 시 안

전농 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면적정정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27호(85.5.18)로 구역변경된 전농 제2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이 없는 단순한 구역면적의 정정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및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1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정정을 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

국 문 등 민 사 장

가. 면적 정정 내역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m ²)		비 고
		당 초	정 정	
주택개량재개발 전농제2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27번지일원	8,277	7,880.9	도면변경없음